

##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철회되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하는 지방행정부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행정도시에 대한 초법적 지위 부여 문제는 7월 착공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 결정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많은 시비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행정 낭비, 명분없는 정책 결정

첫째, 행정도시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로 지정하려는 입법 조치는 명분없는 정치적 결정이다.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추도시의 위상 확보,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거점 기능을 하기 위해 행정도시에 특별한 법적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하나같이 객관적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행정도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되어야 국책사업인 행정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도시건설법과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거 지방행정구역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며, 현재도 정부 직할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의하여 각종 계획수립 및 건설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글은 대전일보(2007. 6. 30)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둘째, 행정도시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특별시'로 지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정부조직 확대와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 행정도시가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충남도에서 분리되면 또 다른 거대한 지방광역행정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지방광역행정조직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교육, 치안, 조세,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부조직이 불필요하게 커지면 행정 낭비와 함께 예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셋째, 행정도시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그동안 유지해 온 지방행정체계의 일관성과 원칙이 붕괴된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했다.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광범위한 지역이거나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지녀야 한다. 최근에는 대도시권 통합과 경제권의 출현 추세에 따라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도 광역자치단체 지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가 행정수도에 버금가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호주의 캔버라와 같이 특별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규모나 행정 수요에 관계없이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법제도의 혼란과 함께 막대한 국가적 예산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적지위 부여, 위헌 논란 우려도

끝으로 행정도시 초법적 지위 부여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위헌성 논란의 부활이다. 행정도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수도를 반대해 온 집단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부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성 논란의 재발은 행정도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시급하지도 않은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억제,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가장 선도적 국책사업이다.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행정도시의 성공적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도시 법적 지위 관련 입법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